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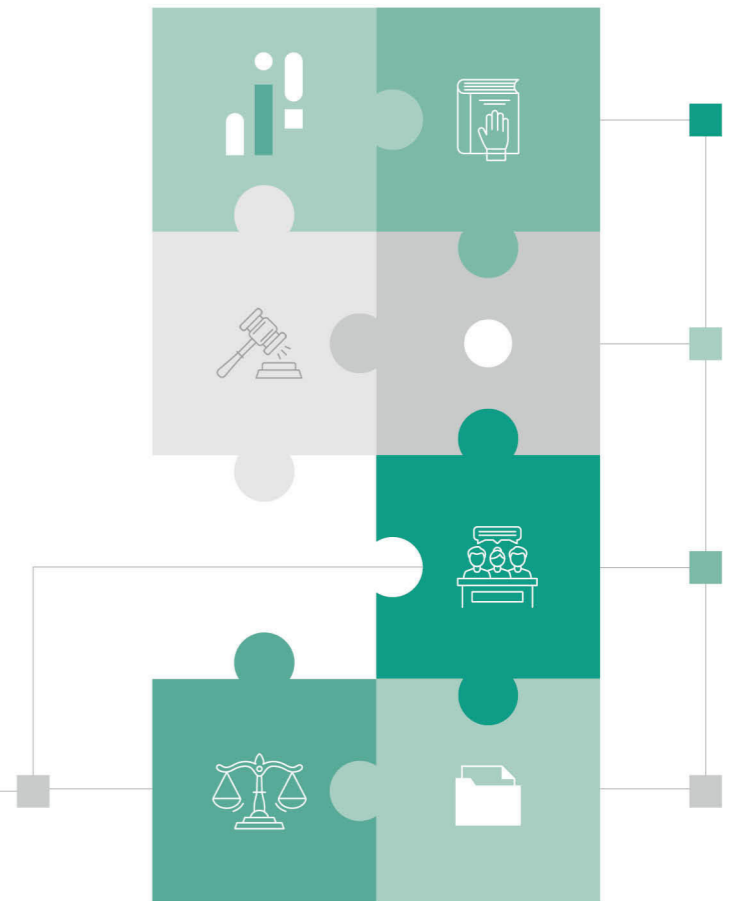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2026.6

국민권익위원회

2025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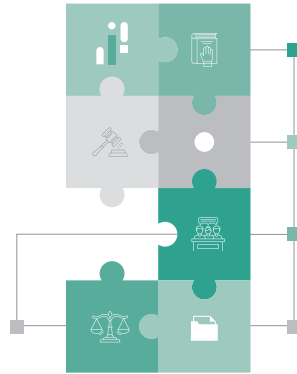
2025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5



2025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5



I 부패영향평가 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06
2. 부패영향평가 기준	08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11
4. 2025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5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36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38
(2) 제재규정의 적정성	46
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②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③ 공연법 시행규칙	55
④ 문화기본법 시행령	58
(3) 특혜발생 가능성	61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②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65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67
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70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74
③ 학교보건법 시행령	76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79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82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85
②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90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3) 재정누수 가능성	96
①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98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100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105
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2) 공개성	109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②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19
④ 관세법 시행령	122
(3) 예측 가능성	124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126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35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7
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0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143
①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145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7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49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0
②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2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154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56
② 도서관법 시행령	159

III 참고자료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164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73
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188
2)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191

2025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5

I

부패영향평가 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 부패영향평가 기준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4. 2025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0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 의의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부패영향평가 목적

-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 법제도에 있어서 부패발생에 취약한 분야의 본질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 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 ▶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자료요청,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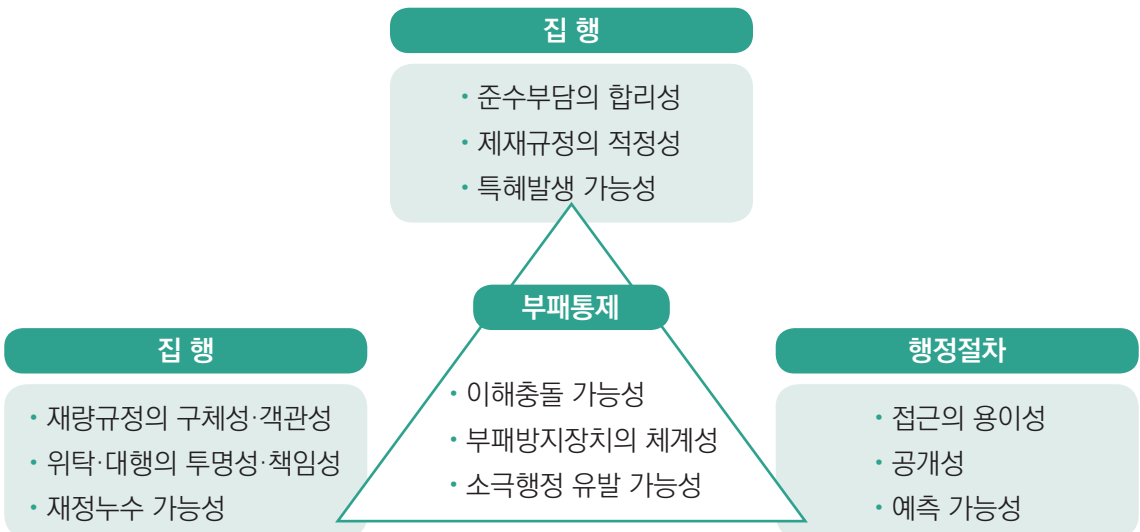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성평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2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 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며,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 침해,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1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4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03

부패영향평가업무 처리절차

1. 부패영향평가 요청

1)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 직제, 국호·국가·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등
-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 참고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

2) 평가요청 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이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 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1) 평가기간

-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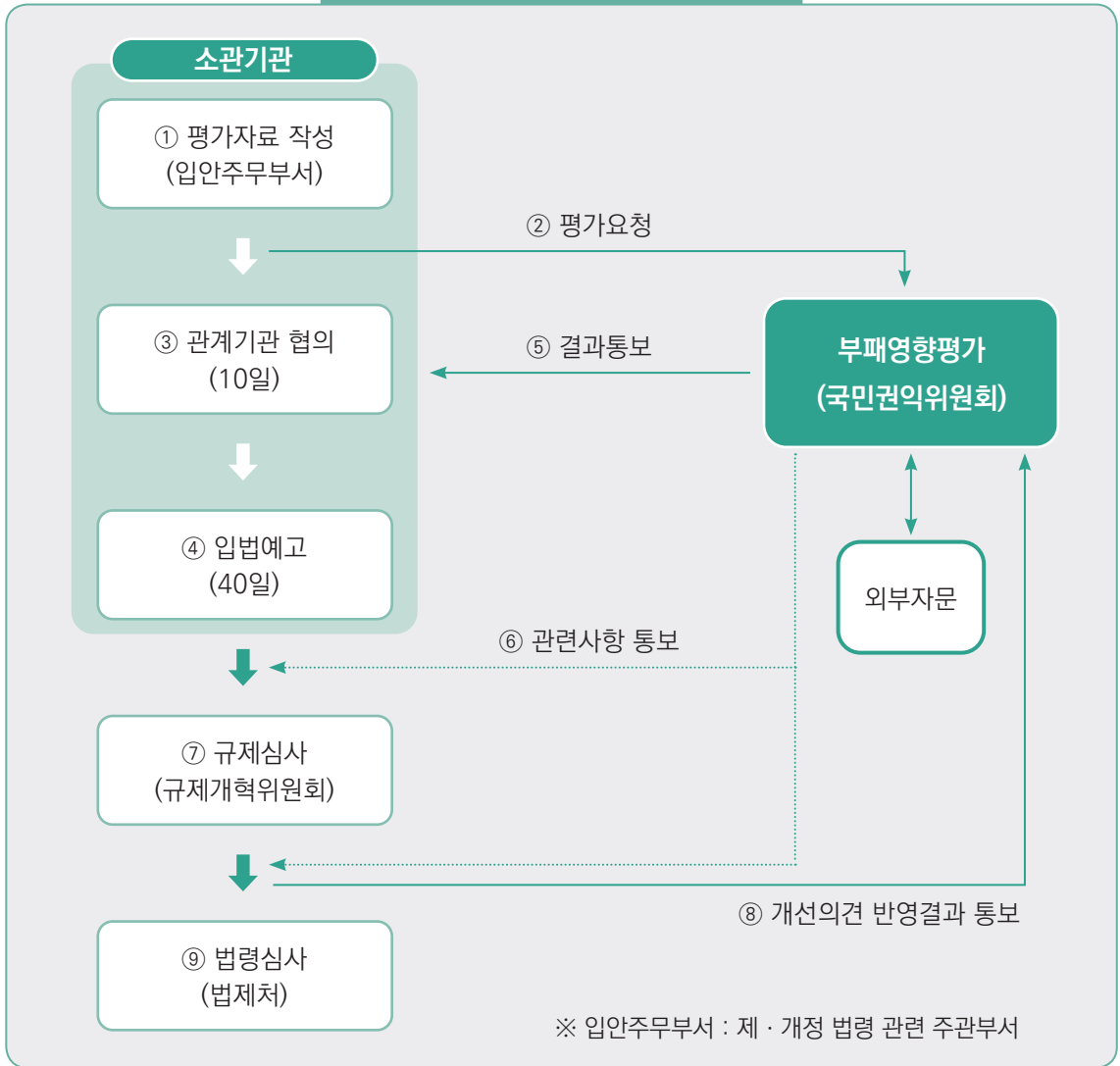
2) 평가방법

-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하여 각 업무에 활용토록 할 수 있음

3) 평가결과의 처리

-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관련 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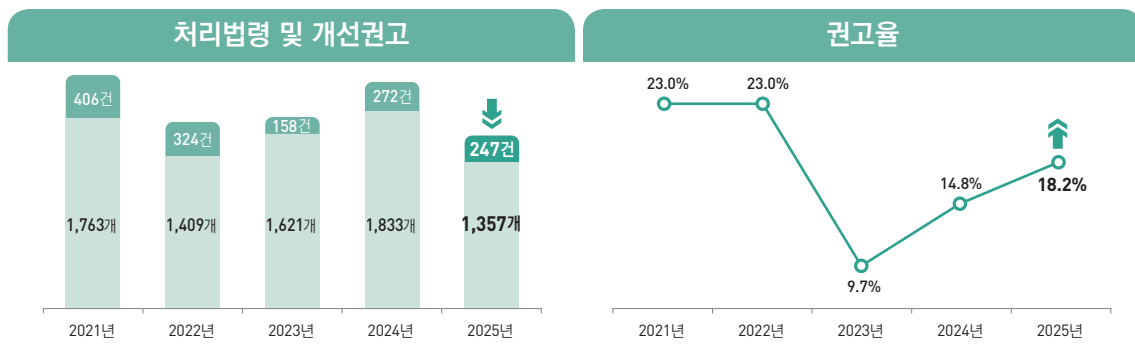
2025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 주요성과

신속평가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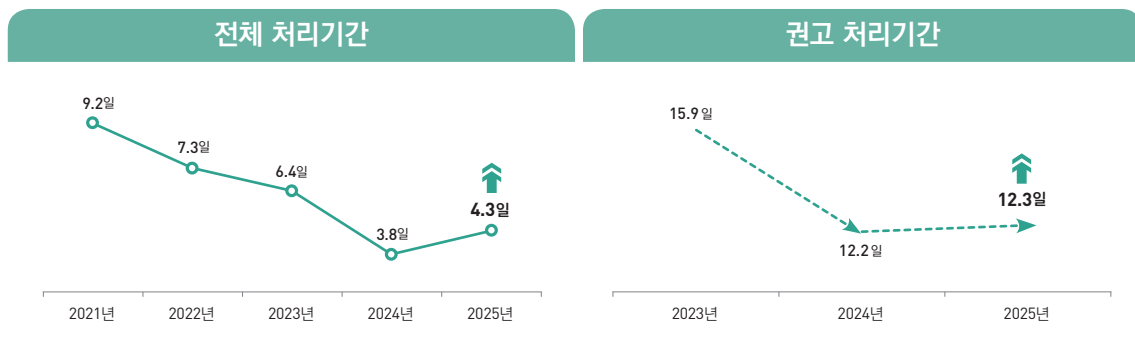
» 1,357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2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의 1,357개 법령을 평가하여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권고사항을 발굴(권고율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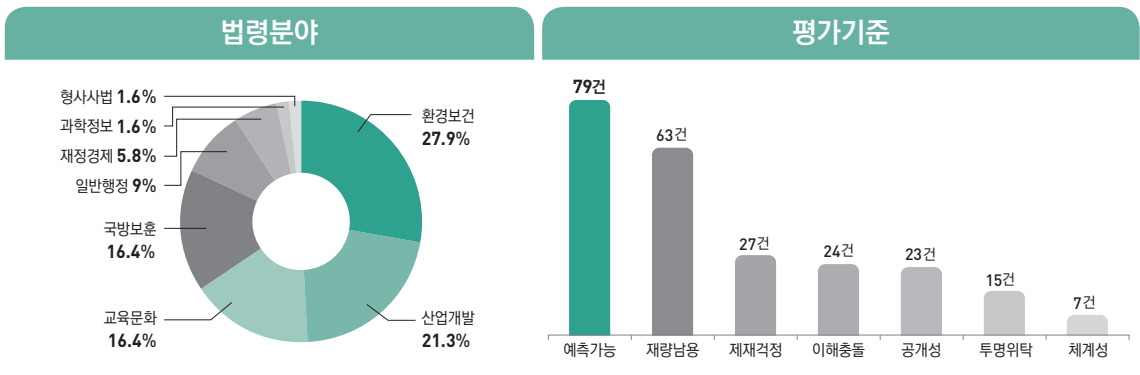
» 평가법령에 대한 전체 처리기간은 4.3일로 전년(3.8일)에 비해 0.5일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4.8일)보다 단축하여 전반적 신속 평가

※ 원안동의 법령 처리기간은 3.5일, 개선권고 법령은 12.3일로 전년대비 원안동의는 0.4일 증가, 개선권고 처리기간은 '24년(12.2일)과 비슷한 수준



적극권고 법령별·분야별 정밀 정비로 부패발생요인을 적극 발굴·차단

- ▶ 개선권고율은 18.2%로 큰 폭으로 증가(14.8%→18.2%)
- ▶ (법령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이 53.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 ▶ (분야별) 법령분야 중 환경·보건(27.9%)의 권고가 가장 두드러지며, 산업·개발(21.3%), 교육·문화(16.4%) 순으로 권고 추진
- ▶ (기준별) 예측 가능성에 따른 권고(32.0%, 79건)가 최다



※ 법령유형과 분야는 권고법령수(122개)를, 평가기준은 권고건수(247건)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1개의 법령안에 다수 권고 시 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주요사례 경제·민생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

-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사용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 ▶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
- ▶ 푸드테크산업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 명확화 및 처분의 가감, 제재의 차등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청 자의적 해석·판단 방지 및 제재의 형평성 강화

2. 세부 추진현황

제·개정 법령안 접수(건)

» '25년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6개 행정기관의 1,351개 제·개정 법령안이 접수되어 전년(1,816개) 대비 25.6% 감소

[제·개정법령 접수현황]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전체누적 ('06.4.~'25.)	30,539(100)	4,853(15.9)	14,135(46.3)	11,411(37.4)	140(0.5)
'21년	1,754(100)	134(7.6)	916(52.2)	704(40.2)	-
'22년	1,449(100)	134(9.3)	716(49.4)	597(41.2)	2(0.1)
'23년	1,594(100)	146(9.2)	837(52.5)	609(38.2)	2(0.1)
'24년	1,816(100)	211(11.6)	908(50.0)	697(38.4)	-
'25년	1,351(100)	77(5.7)	712(52.7)	562(41.6)	-

제·개정 법령안 처리(건)

- ▶ 1,357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전년(1,833개) 대비 26.0% 감소
 - '24년은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법 제·개정 수요가 증가하여 많은 법령 검토가 있었으나, '25년은 평가법령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산업개발 분야가 대폭 감소('24년 607건 → '25년 364건)

[제·개정법령 처리현황]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전체누적 ('06.4.~'25.)	30,524(100)	4,855(16.4)	14,132(46.3)	11,393(37.3)	144(0.5)
'21년	1,763(100)	136(7.7)	920(52.2)	707(40.1)	-
'22년	1,409(100)	131(8.0)	701(50.3)	575(41.2)	2(0.1)
'23년	1,621(100)	143(8.8)	849(52.4)	627(38.7)	2(0.1)
'24년	1,833(100)	218(11.9)	913(49.8)	702(38.3)	-
'25년	1,357(100)	77(5.7)	715(52.7)	565(41.6)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715개, 52.7%)이 절반을 차지
- ▶ 영향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4.3일로 '24년에 비해 0.5일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4.8일)보다 단축하여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평가
 - 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26.0% 감소하였으나, 권고율이 높아져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보임

[처리기간]

(단위 : 개, 일)

구분	전체 평가법령		개선법령		원안법령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전체누적 (’06.4.~’25.)	30,524	13.9	3,255	23.3	27,269	12.9
’21년	1,763	9.2	182	15.5	1,581	8.5
’22년	1,409	7.3	136	14.8	1,273	6.5
’23년	1,621	6.4	85	15.9	1,536	5.9
’24년	1,833	3.8	148	12.2	1,685	3.1
’25년	1,357	4.3	122	12.3	1,235	3.5

- 원안동의의 경우 3.5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빠른 제·개정을 지원
- 개선권고 역시 12.3일로 처리기간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여 각 부처 주요 법령의 제·개정을 신속·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개선권고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122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247건의 개선을 권고

[개선권고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체누적 (’06.4.~’25)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 (전년대비)
평가법령	30,524	1,763	1,409	1,621	1,833	1,357	26.0 ↓
개선법령	3,255	182	136	85	148	122	17.6 ↓
개선권고	7,634	406	324	158	272	247	9.2 ↓
개선권고율	25.0	23.0	23.0	9.7	14.8	18.2	3.4%p ↑

- 개선권고율은 18.2%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14.8%→18.2%)
- 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가 20개 법령안에 대해 50건으로 전체 권고(247건)의 20.2%를 차지
- » 경제·민생 등 주요 분야별·부처별 전담직원 지정 등 접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제·개정 지원
 - 평가 수요증가에 대한 적극 대응 및 법환경 변화에 맞춘 권고 기준 지속 정비 등 개선권고의 품질·완성도는 제고하고 신속성은 높임
 - * (권고 기준 정비) 기관별 장기지연·미이행 과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권고 기준 지속 개선추진

개선법령별 세부현황

① 법령 유형별

- ▶ 전체 개선법령 중 대통령령이 53.3%(65개)로 법률 위임사항이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가장 큰 비율 차지

[유형별 개선법령]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전체누적 (’06.4.~’25.)	3,255(100)	710 (21.8)	1,653(50.8)	860 (26.4)	32 (1.0)
’21년	182(100)	18 (9.9)	116 (63.7)	48 (26.4)	-
’22년	136(100)	5(3.7)	95(69.9)	35 (25.7)	1(0.7)
’23년	85(100)	6(7.1)	56(65.9)	22(25.9)	1(1.2)
’24년	148(100)	11(7.4)	84(56.8)	53(35.8)	-
’25년	122(100)	2(1.6)	65(53.3)	55(45.1)	-

※ 전체 개선권고(247개) 중 대통령령에 대한 개선권고는 127개로 51.4%

② 법령 분야별

- ▶ 분야별로는 환경·보건이 27.9%(34개 법령, 69건 권고)으로 가장 많고, 산업·개발 21.3%(26개 법령, 47건 권고), 국방·보훈 16.4%(20개 법령, 47건 권고) 순
- ▶ 환경·보건 분야는 보건복지부(18개 법령, 46건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8개 법령, 13건 권고) 등의 소관 법령으로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성인병·질환의 예방 및 관리 또는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령 개선이 두드러짐

(환경·보건) 참고 사례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성분 정보 공개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료행정의 투명성 제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사용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표지 부당 사용자의 위반 사실에 대해 무기한으로 위반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공개 기간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제재의 적정성 확보

- » 산업·개발 분야의 경우 국토교통부(9개 법령, 16건 권고), 농림축산식품부(5개 법령, 11건 권고), 해양수산부(6개 법령, 8개 권고) 등의 소관 법령으로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률 제정에 따른 신산업 지원, 농업·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개선이 많았음

(산업·개발) 참고 사례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담기관 지정 세부 기준을 당해 법령 또는 고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간 일치된 부과 기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행정처분 방지

[법령분야별 개선법령]

(단위 : 개, %)

구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누적 (’06.4. ~’25.)	평가 법령	30,524 (100)	5,537 (18.1)	3,222 (10.6)	2,019 (6.6)	3,261 (10.7)	8,602 (28.2)	1,152 (3.8)	5,412 (17.7)	1,226 (4.0)	93 (0.3)
	개선 법령	3,255 (100)	467 (14.3)	415 (12.7)	182 (5.6)	238 (7.3)	1,000 (30.7)	172 (5.3)	684 (21.0)	90 (2.8)	7 (0.2)
’21년	평가 법령	1,763 (100)	298 (16.9)	171 (9.7)	146 (8.3)	148 (8.4)	552 (31.3)	38 (2.2)	332 (18.8)	78 (4.4)	-
	개선 법령	182 (100)	38 (20.9)	22 (12.1)	11 (6.0)	15 (8.2)	39 (21.4)	2 (1.1)	54 (29.7)	1 (0.5)	-
’22년	평가 법령	1,409 (100)	238 (16.9)	122 (8.7)	88 (6.2)	155 (11.0)	429 (30.5)	57 (4.0)	245 (17.4)	75 (5.3)	-
	개선 법령	136 (100)	27 (19.9)	21 (15.4)	5 (3.7)	19 (13.9)	31 (22.8)	14 (10.3)	14 (10.3)	5 (3.7)	-
’23년	평가 법령	1,621 (100)	303 (18.7)	115 (7.1)	135 (8.3)	184 (11.4)	510 (31.5)	42 (2.6)	261 (16.1)	71 (4.4)	-
	개선 법령	85 (100)	7 (8.2)	6 (7.1)	-	8 (9.4)	40 (47.1)	7 (8.2)	12 (14.1)	5 (5.9)	-
’24년	평가 법령	1,833 (100)	312 (17.1)	157 (8.6)	129 (7.0)	176 (9.6)	607 (33.1)	67 (3.7)	313 (17.1)	72 (3.9)	-
	개선 법령	148 (100)	14 (9.5)	20 (13.5)	5 (3.4)	8 (5.4)	53 (35.8)	9 (6.1)	34 (23.0)	5 (3.4)	-
’25년	평가 법령	1,357 (100)	216 (15.9)	130 (9.6)	121 (8.9)	167 (12.3)	364 (26.8)	48 (3.5)	262 (19.3)	49 (3.6)	-
	개선 법령	122 (100)	11 (9.0)	20 (16.4)	20 (16.4)	7 (5.7)	26 (21.3)	2 (1.6)	34 (27.9)	2 (1.6)	-

기관별 세부현황

- ▶ (평가의뢰)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의뢰 상위부처는 국토교통부(11.5%, 156개)였고, 다음으로 재정경제부(7.8%, 106개), 보건복지부(7.3%, 98개) 순으로 나타났음
- ▶ (개선법령) 보건복지부가 14.8%(18개)로 개선법령 수가 가장 많았고, 국가보훈부(9.0%, 11개), 문화체육관광부(8.2%, 10개)가 그 뒤를 차지
 - 의뢰건 대비 권고율은 보훈부(20.4%), 문체부(18.9%), 복지부(17.0%) 순
 - ※ 전체 권고건수(247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18.6%, 46건)가 가장 많고 국가보훈부(13.0%, 32건), 문화체육관광부(9.7%, 24건) 순임

[기관별 현황]

(단위 : 개, 건, %)

구분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개선법령	개선권고	원안법령
계	1,351	1,357	122	247	1,235
국토교통부	156	152(100.0)	9(5.9)	16	143(94.1)
재정경제부	106	105(100.0)	5(4.8)	15	100(95.2)
보건복지부	98	106(100.0)	18(17.0)	46	88(83.0)
행정안전부	83	83(100.0)	5(6.0)	9	78(94.0)
기후에너지환경부	78	78(100.0)	10(12.8)	19	68(87.2)
해양수산부	62	62(100.0)	6(9.7)	8	56(90.3)
국방부	59	59(100.0)	9(15.3)	15	50(84.7)
교육부	56	58(100.0)	8(13.8)	14	50(86.2)
국가보훈부	54	54(100.0)	11(20.4)	32	43(79.6)
문화체육관광부	51	53(100.0)	10(18.9)	24	43(81.1)
기 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6개 기관)	548	547(100.0)	31(5.7)	49	516(94.3)

※ 부처 정렬은 제·개정법령 평가의뢰(접수)건수를 기준

평가기준별 세부현황

» 예측 가능성 기준에 따른 권고가 32.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5.5%(63건), 제재규정의 적정성 10.9%(27건) 순

[평가기준별 현황]

(단위 : 건, %)

분야	평가기준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406 (100)	324 (100)	158 (100)	272 (100)	247 (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3 (0.7)	2 (0.6)	4 (2.5)	2 (0.7)	3 (1.2)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34 (8.4)	16 (5.0)	7 (4.4)	26 (9.6)	27 (10.9)
	③ 특혜발생 가능성	2 (0.5)	4 (1.2)	6 (3.8)	5 (1.8)	1 (0.4)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78 (19.2)	140 (43.2)	60 (38.0)	107 (39.3)	63 (25.5)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21 (5.2)	11 (3.4)	9 (5.7)	14 (5.1)	15 (6.1)
	⑥ 재정누수 가능성	2 (0.5)	3 (0.9)	1 (0.6)	1 (0.4)	3 (1.2)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21 (5.2)	3 (0.9)	2 (1.3)	3 (1.1)	2 (0.8)
	⑧ 공개성	24 (5.9)	17 (5.3)	8 (5.1)	13 (4.8)	23 (9.3)
	⑨ 예측 가능성	82 (20.2)	63 (19.5)	36 (22.8)	62 (22.8)	79 (32.0)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 가능성	127 (31.3)	55 (17.0)	21 (13.3)	36 (13.2)	24 (9.7)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6 (1.5)	5 (1.5)	4 (2.5)	3 (1.1)	7 (2.8)
	⑫ 소극행정유발 가능성	6 (1.5)	5 (1.5)	-	-	-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은 과태료 부과·감면이나, 영업정지·취소 등 침익적 처분 기준의 구체화, 지정·인증·평가 등과 관련한 재량의 기준이나 범위의 명확화 등을 주로 권고
 - 특히 권리·의무 관련(사례 ①)이나 불이익(사례 ②) 또는 자격 부여(사례 ③)하는 처분 등의 요건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주요 사례

- 사례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정책센터로 부적합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

주요 사례

- 사례 ②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 명확화 및 처분의 가감, 제재의 차등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청 자의적 해석·판단 방지

- 사례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재난관리 인력의 배치 배제

- ▶ 예측 가능성은 위임·위탁규정의 구체성이나 공개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여 공공·행정 정보 접근성 제고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
 - 해당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사례 ①) 해 혼선을 방지하고, 신체검사 등의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사례 ②) 정해 국민 편의·접근성 제고

주요 사례

- 사례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단체로 한정하여,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모호성 제거

- 사례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기간제 교원에 대한 신체검사 등의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반국민의 법·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신뢰성 확보 및 교원 채용의 객관성 제고

» 제재규정의 적정성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 및 정도가 적정한지의 개선으로 전년과 유사한 권고비중을 차지

- 과태료 부과 등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시 유사 법령의 제재내용 등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여 적절한 제재수준 확보

주요 사례

- 사례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위반의 내용·정도와 피해 등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 처분과 처분의 회피를 위한 불법 로비 가능성 차단

- 사례 ②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공연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경우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면제를 금지하여 형평성 확보

3. 개선권고 주요 사례[영역별]

신산업·신기술 지원

사례 ①													
법령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분야				산업개발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			

- 푸드테크산업 전담기관의 업무정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일반기준 마련, 가중사유 구체화 및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 소지 차단 및 제재의 적정성 확보

사례 ②													
법령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분야				산업개발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이 기피 대상인 경우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적용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예측 가능성 제고

공정 채용

사례 ③													
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교육부				법령분야				교육문화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기간제교원에 대한 신체검사 등의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채용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신뢰성 확보 및 교원 채용의 투명성 제고

사례 ④													
법령안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법령분야				일반행정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누수 가능성 차단

고용 안정

사례 ⑤

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령분야				일반행정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 고용창출사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 등 위임·위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사업의 위임·위탁의 투명성 제고

사례 ⑥

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령분야				일반행정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신청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정에 필요한 첨부서류 규정 관련,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 대상을 구체화하여 대상 기관만 제출하도록 규정,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교육·문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사례 ⑦ </div>													
법령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교육부				법령분야				교육문화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원에 대해 해촉사유를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및 지정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접근 용이성 제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사례 ⑧ </div>													
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령분야				교육문화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	

- 문화체육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재정계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고,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복지·취약계층 지원

사례 9													
법령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법령분야				환경보건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사용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례 10													
법령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법령분야				환경보건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			

-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 결과, 수탁기관·사무의 내용,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취소에 대한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 가능성 강화 및 접근 용이성 제고

의료·보건

사례 11

법령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법령분야				환경보건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성분 정보 공개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료행정의 투명성 제고

사례 12

법령안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분야				환경보건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대행기관 선정에 있어, 최소한의 판단 기준 부재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어 지정기준 고시 등 하위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2025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5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 1) 준수
- 2) 집행
- 3) 행정절차
- 4) 부패통제



01

평가기준별 사례

1 ▶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개 요

-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 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당해 부담 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사례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80% 이내의 수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지난 4년간의 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 교육 이수 내역
3. 지난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
4. 지난 4년간의 법 제13조에 보고·검사 결과
5.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계획과 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6. 간이측정기 구매·관리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우수시설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부 홈페이지와 법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기재할 수 있다.

1. 우수시설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우수시설의 소재지·시설 유형
3. 우수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4. 지정 기간

⑦ 환경부장관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방법,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현황

» 법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지정취소 등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연관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포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관 조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4. (생략)
- ⑤ - ⑧ (생략)

연관 조문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 안 별지제2호의10서식의 구비서류 중 가목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됨에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못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불명확한 우수시설 지정 기준

- 법 제12조의3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을 정하여, 우수시설 지정 기준·절차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 안 제11조의2제4항에서는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조문 내용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자의적 결정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필요

연관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4년간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법 제14조에 따른 벌칙 및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과 환기·저감 설비를 마련하고 있을 것
3.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실시간 측정·관리할 것
 - 가. 이산화탄소(CO2)
 - 나. 초미세먼지(PM2.5)

② (생략)

▶ 지정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미표기

- 개정안에서는 심사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예측 가능성 저해가 우려되고,
- 특히 「행정절차법」 제19조에서는 행정청이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미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면 안 별지제2호의10서식에 처리기간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연관 조문 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우수시설 지정 절차·방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 미흡

- 법 제12조의3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을 정하고, 우수시설 지정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안 제11조의2제8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우려
- 따라서 우수시설 지정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고시 등의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6)〉 제1편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 형식의 선택 p.22

-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급적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것이고,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어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법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법령처럼 반드시 일반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형식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담은 법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공고 또는 법규범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어 발령하는 고시 형식으로 발령해야 할 것이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8항, 별지제2호의10서식)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규정
- » (안 제11조의2제4항) 우수시설 지정 기준 명확화(적합성 → 영 제10조의2 근거)
- » (안 별지제2호의10서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서식 보완
- » (안 제11조의2제9항) 우수시설 지정 절차·방법은 고시 등의 하위규정에 위임하여 구체화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호, 2026. 4. 16., 일부개정]

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
2. 영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운영 계획 및 환기·공기정화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3. 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이하 “측정기기등”이라 한다) 구매·운영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0서식] <신설 2026. 4. 16.>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 지 정 신청서 [] 재지정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 현황	시설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지정/재지정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시설 용도	<input type="checkbox"/> 지하역사 <input type="checkbox"/> 지하도상가 <input type="checkbox"/> 철도역사 대합실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input type="checkbox"/> 향만 대합실
	<input type="checkbox"/> 공항 여객터미널 <input type="checkbox"/> 도서관 <input type="checkbox"/> 박물관·미술관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점포 <input type="checkbox"/> 장례식장 <input type="checkbox"/> 영화상영관
	<input type="checkbox"/> 학원 <input type="checkbox"/> 전시시설 <input type="checkbox"/> PC방 <input type="checkbox"/> 목욕장업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input type="checkbox"/> 실내주차장

일반 현황	연면적(m ²)	준공년도(또는 개소년도)
	건물의 총 층수/사용층	주방 및 식당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개폐 가능한 창문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자 명

시설관리 현황	유자관리계획수립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측정기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환기설비 현황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기 <input type="checkbox"/> 실내환기팬 <input type="checkbox"/> 공조기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입)	
	공기정화설비현황(전부 표시) <input type="checkbox"/> 공기청정기 <input type="checkbox"/> 온·습도 관리설비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입)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수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가. 최근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 나. 시설 운영 계획 및 환기·공기정화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 구매·운영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 요

-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검토
-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평가

평가내용

- ▶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규정·내용을 검토
-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

 |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nput type="checkbox"/>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사례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 ⑤ (생략)

📖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 | 현 황

»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 문 제 점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 미흡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지정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당연 취소사유가 아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임의 취소사유로 규정
 - 따라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행정청이 지정취소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지정취소를 면하기 위한 부정청탁 등 부패 발생가능성이 존재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6)〉 제2편 제2장 실체 규정 p.120

- 행정처분은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로 구분하되, 허가 취소 사유를 정할 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당연취소사유로 하고, 그 밖의 사유는 임의취소사유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며,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지정을 받은 경우 당연 취소사유로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57호, 2025. 7. 21., 일부개정]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3. (생략)
- ⑥ - ⑦ (생략)

사례 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푸드테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 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할 것
 - 나. 푸드테크산업 육성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것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평가대상 조문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 3)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 업무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중 규정 부재
 - 법 제13조제6항에서는 푸드테크산업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를, 법 제20조에서는 푸드테크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를 안 별표1 및 별표2에 각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 안 별표1 및 별표2의 일반기준에는 감경 규정만을 정하여, 처분의 가중이 필요한 경우(위반 내용·정도 중대, 장기간 법 위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가중 규정 부재
 - 특히 위반 사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정도에 차등의 필요성이 크에도, 오로지 위반 횟수에만 근거하여 부과된다면, 제재의 형평성 측면에서 의미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음
 - 이와 함께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부처, 전담기관, 사업자 등)와 연관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 업무정지 및 과태료 가중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가중 사유를 포함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6)〉 제2편 제2장 실체 규정 p.129

- 행정처분의 개별·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가중이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을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반인 경우,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경우 등을 가중사유로 규정한다.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6)〉 제2편 제2장 실체 규정 p.213

- 가중·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함께 규정하며,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어도 과징금액은 법률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6)〉 제2편 제4장 벌칙 규정 p.612

- 따라서 계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외에 다른 제재수단을 함께 두거나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 자체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업무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 확보
 - 가중에 대한 일반기준 마련(가중 상한 범위 등)
 - 가중사유(중대한 위반, 장기간 법 위반, 고의적 행위 등) 구체화

📖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21.] [대통령령 제35906호, 2025. 12. 16., 제정]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9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푸드테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생략)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푸드테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생략)

사례 3

공연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 - ④ (생략)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 황

»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공연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연관 조문 공연법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 ④ (생략)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 7.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생략)

문 제 점

- ▶ 행정처분 면제 예외조항 부재에 따른 제재규정의 적정성 미흡
 -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사법절차에 따른 판결 결과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연자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면제해야 하는 결과 초래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연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예외조항 마련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7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자·공연장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공연자·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연자·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연자·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연자·공연장운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사례 4

문화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조의2(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⑦ (생략)

- ⑧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별표 1]

수행기관 지정취소의 처분기준(제4조의2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으로 보아 그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3 제3항 제3호	경고	지정취소

평가기준

- » 제재규정의 적정성, 예측 가능성

현황

- »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연관 조문 문화기본법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 경고 처분 후, 위반행위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미흡
 - 법 제9조의3제3항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취소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절차·운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안 별표1에서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나,
 - 안 별표1의 개별기준 나목 및 다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후 일정한 기간 이상 위반행위를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2차 위반 적용 기준이 부재함
 - 기준 부재에 따라, 행정청과 수행기관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되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제재 정도의 수준이 과도해질 가능성이 있어,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우려됨
 - 특히 경고처분은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개선·보완하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고 처분 후 일정 기간 뒤에 위반행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1차 행정처분(경고) 후, 위반행위 개선 여부에 따른 2차 행정처분(지정취소) 적용 기준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문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4호, 2026. 3. 24., 일부개정]

[별표 1]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의3제1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3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9조의3 제3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3 제3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평가내용

-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 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 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특정 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 (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사례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매각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매각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매각과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제 점

-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 가능 기관에 대한 예측 가능성 미흡
 - 법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개정안에선 이를 ‘학교 등 교육시설’로 확대하여 규정
 - 이는 법률이 한정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법 체계의 정합성에 어긋나며,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제도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우려
 - 특히 수익계약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의 경우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교 등 교육시설’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특정 교육시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및 공유재산 매각의 투명성 훼손 우려

검토결과: 개선권고

- ▶ 공유재산 매각 가능 기관을 명확히 한정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 삭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9.] [대통령령 제35785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매각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사례 2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1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제조 또는 수입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자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디지털의료기기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제조업자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의료기기를 송신하고 소비자의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수신하여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제조업자등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소비자의 정보통신설비 등에 직접 설치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 제정안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확인·조사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7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서비스 구독·제공, 전자적 설치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제 점

▶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불명확

- 제31조는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형태에 대해 규정하나, 4호는 ‘그 밖에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해당사항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 부재
- 면제는 그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정확히 알 수 없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며 대상자에 따라 권익 침해 혹은 특혜 발생 가능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을 당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고시 등의 하위규정으로 위임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8.] [총리령 제2025호, 2025. 2. 28., 제정]

제36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제조 또는 수입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디지털의료기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의료기기를 송신하고 소비자의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이를 수신하여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소비자의 정보통신설비 등에 디지털의료기기를 직접 설치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 요

-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 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 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례 1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④ 삭제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개정안은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9744호, 2023. 10. 24. 공포, 2023. 10. 24.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다른 이첩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재이첩 조항을 삭제(안 제7조) 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군사법원법** [시행 2023. 10. 24.][법률 제19744호, 2023. 10. 24., 일부개정]

① - ② (생략)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④ - ⑤ (생략)

관련 법령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삭제 <2025. 1. 31.>

④ 삭제 <2025. 1. 31.>

⑤ 삭제 <2025. 1. 31.>

[시행일: 2025. 8. 1.]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31.]

[시행일: 2025. 8. 1.]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을 없다.

문 제 점

-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법적 근거 구체화 미흡
 - 안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안 조문의 법 제228조제3항은 ’25. 1. 31. 일부개정으로 조항은 삭제되어, 해당 안 조문의 재량 판단의 기준 근거가 되는 상위법 근거 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삭제된 조항이 법 제228조의3으로 신설됨에 따라 ‘--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이첩해야 한다.’ 라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 조문을 수정하여 재량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사건 이첩 시 관계 서류 등 송부 규정 상위 법령과 부조화
 - 수사기관 간의 이첩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때,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기록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다음 단계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타 입법례의 자료에서도 사건 이첩 시 서류 등 송부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안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 할 수 있다.’ 라고 재량규정하고 있으며
 - 상위법 제286조에 의거 사건송치할 때는 ‘--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 송치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 송부 할 수 있다.’ 라는 재량규정으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 될 우려 방지와 법령 간의 조화·절차상 투명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안의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 하는 것이 타당함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제1항) 재량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적 근거 명확화
- ▶ (제3항) 사건 이첩 시 관계 서류 등 송부 규정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2. 10.] [법률 제36082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1.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해당 기관

④ 삭제

사례 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6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위해예측 수행 관련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2. 예측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 위해예측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방법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 ⑨ (생략)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 황

» 개정안은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 제 점

»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센터 지정 여부가 부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
 - 이는 지정 선정에 있어, 최소한의 판단기준 부재로 적격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선정될 수 있는 등 부패발생 가능성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과 관련한 지정기준 구체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3. 19.] [대통령령 제36122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위해예측 수행 관련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 2. 예측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 3. 위해예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을 것

② - ⑤ (생략)

사례 3

학교보건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2조의4(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별 주요 교육내용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현 황

»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문 제 점

- ▶ 그 밖에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체가 불분명함
 - 안 제22조의4제3항제5호의 “그 밖에”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 행사로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 그 밖에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정 주체 명확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8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22조의2(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사례 4

산림보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 다.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 가능성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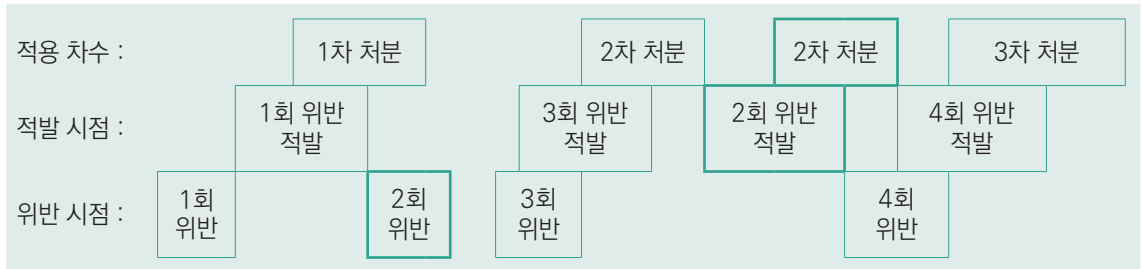
- ▶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과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문 제 점

- ▶ 위반차수 산정을 위한 회차 적용 기준 미비
 -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차등 적용해야 하나, 적용차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 위반행위가 2건 이상으로 행위시와 적발시가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후 앞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처분의 적용차수 기준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정처분 발생 및 예측 가능성 저하 우려

〈 적발이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 적용사례(1차 처분일과 4회 위반적발일 기간 : 1년)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932('21.03.04.)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 참고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 규정 신설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 방지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71호, 2025. 6. 2., 일부개정]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 라.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개요

-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평가방법

-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수탁기관이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5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사례 1

고용보험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및 권한 위탁에 따른 업무의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2. 근로복지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이하 “노사발전재단”이라 한다)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⑤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⑥ - ⑨ (생략)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 가능성

현황

- ▶ 현 고용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①유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②구직급여, ③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④고용보험 사업 위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제점

- ▶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부재
 - 법 제11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 안 제145조제4항에서는 특정 기관에 위임·위탁을 확정적으로 정하기 모호한 사무에 대해 제1호부터 제7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이 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 어떤 기관이 위임·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자의적인 운영 가능성 등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 저해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고용창출사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 등 위임·위탁되는 사업에 대한 규모, 사회적 영향력,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을 고려한다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즉, 위임·위탁이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사업의 위임·위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6)》 제2편 제3장 보칙 규정 p.493

- 개별 법률에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소재를 명확히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미리 수탁기관과 합의를 하여 각 개별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위탁한다”로 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한다. 다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법인·단체 중에서 전문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가 결정된 경우에는 국민이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 등의 하위규정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9. (생략)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8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 26. (생략)

② - ③ (생략)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2.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3.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5.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6.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복지공단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발전재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한국산업인력공단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 ⑦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⑧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 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3.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의 평가와 지원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⑨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4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업무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⑩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하며, 그 임명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책의 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 담당이사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직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직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⑪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 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사례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의4(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원 범위 및 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개발 완료 후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지원
 2.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실증 및 인허가 지원
 3. 공공부문에서 유망 기술의 초기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4.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평가, 기술거래 지원
 5.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활동 및 대국민 홍보 지원
 6. 기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성공적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5(표준화 사업 추진 등)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2. 표준화 전략 수립 및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협력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협력
 4.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화의 동향 조사·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 ② 정부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예측 가능성

 현 황

»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등 세부절차와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원에 관한 업무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 추진을 수행할 기관의 법률상 위탁 근거 부재
 - ‘정부’는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표준화에 관한 시책 추진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7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2조의4제2항 및 제15조의5제2항에서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행정기관의 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법률상 위탁 근거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위탁·대행의 투명성이 저해됨
- ▶ 수탁기관, 위탁대상 등 위탁 관련 세부사항 부재
 - 수탁기관을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여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행정청의 자의적 수탁기관 선정 등에 따른 재량권 남용 우려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탁 조문 삭제 (①정부의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②표준화 시책 추진)
- ▶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원 및 표준화 시책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하기 위한 조문 신설
 -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법 제24조제1항에서 지정하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구체화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위탁 조문 삭제 및 해당 법령 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55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1. - 2. (생략)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3. - 4. (생략)

4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정보조사

5. (생략)

② (생략)

사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의3(피해구제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른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따른 게임 이용 피해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피해구제 방안 강구 및 법률적 지원
4.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5. 피해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6. 피해 예방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업무
2.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업무
3.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 4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5.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② - ④ (생략)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 해외 게임사의 ①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및 게임 이용자의 ②피해 구제 제도 도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구체화(매출액, 이용자 수 등)
 - 피해구제센터의 업무 범위(신고 접수·상담·지원 등) 등 운영사항 구체화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 ④ (생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문제점

- »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대한 권한 위탁의 불분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 피해구제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장관이 센터를 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한 점은 법률상 위탁에 해당하지만, 권한의 위탁을 규정한 안 제23조에서는 위탁의 범위에 센터 운영 또는 피해구제지원 업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 센터 운영 또는 피해구제지원 업무가 위원회에 위탁된 것인지 위탁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혼란의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에 권한을 위탁할 경우 명확한 위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의 기반이 되고, 특히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이 위탁사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안 제23(권한의 위탁 등)의 권한이 위탁되는 업무에 ‘피해구제센터 설치·운영’을 포함하여 위탁 업무를 명확히 규정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75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 4의2. (생략)
- 4의3.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업무
5.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

② - ④ (생략)

(3) 재정누수 가능성

개요

-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평가
-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 유발요인을 평가

평가방법

-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검토
-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 취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 제도와 비교할 때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환수 또는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등)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사례 1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현황

- » 제정안은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소통 협의체로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문제점

- »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시, 재정 누수 가능
-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위원 위촉 등에 따른 수당·여비 등 과지급 우려

검토결과: 개선권고

- »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2. 2.] [대통령령 제35891호, 2025. 12. 2., 제정]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례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제3조 관련)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기준 (생략)
2.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직원 배치 및 자격기준
 - 가. 인력배치기준 (생략)
 - 나. 자격기준
 - (1) - (3) (생략)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시설, 인력 및 직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부재
- 안 제3조제3항에 의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6과 같다고 되어 있으나,
 - 별표 6에는 설치기준, 인력배치 기준, 자격 기준만 규정되어 있을 뿐, 관리규정, 장부 등의 비치사항, 회계처리 방침 등 ‘운영기준’이 부재하여 센터장의 자의적 운영으로 장애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로 센터간 서비스 편차 심화, 보조금 등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저하로 예산낭비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 마련

📄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41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배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배치 기준 (제3조제3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 1)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2)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3) 초기상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분리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장애아동과 가족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비대면으로 조기개입·상담·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노트북, 마이크, 카메라 및 스피커 등 화상회의 장비를 구비하고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

- 1) 16.5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 직원,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2) 효과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라. 진열대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등의 보조공학기기 및 터치스크린 등 정보열람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진열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 일지
- 4)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 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장부
-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9) 신고받거나 접수받은 장애아동의 조사·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

다. 회계

-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자격기준

가.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다. 전문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에 따른 의사

-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 5)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 6)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7)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직원의 배치기준

구분	역할	인원
센터장	센터 업무 총괄 관리	1명
조기개입 서비스	가. 장애영유아 및 가족 대상 정보제공 및 연계 나.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다. 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연계체계 구축 라. 가족지원서비스(양육코칭, 상담, 부모교육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원
맞춤형 통합지원	가. 장애아동 및 가족 대상 사례 발굴 나.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사업, 부모교육 등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적 지원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마.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사.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명 이상
운영지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조직운영(회계, 행정, 인력 사무)	2명 이상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개 요

-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방법

-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후예측정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등 기후변화예측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제공한다.

 | 평가기준

-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 현 황

- » 개정안은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정보 제공 범위 및 정보 제공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문 제 점

- » 불명확한 정보 제공 방법
 -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의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 안 제10조의2제2항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만으로는 정보 제공 방식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관계 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보 접근성 저해 우려가 있음
 - 특히 신·재생 에너지 특성상 기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기후 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보 제공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제공 방법을 명확히 규정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8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2) 공개성

개 요

-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평가방법

-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지 않은지 검토
-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공개성,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관련 결과 공개 등 규정 미흡
 -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가 해당 기관의 사회서비스 관련 다양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실시, 그 결과가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가 조사이므로,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결과 공개 규정이 부재하며,
 - 또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고를 위해서 조사계획을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에 대한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도 부재함
 -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 책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①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고, ②실태조사 결과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하는 규정 명확화
-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규정 명확화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89호, 2025. 9. 30., 일부개정]

-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사례 2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기아동·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조직 지정·위탁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상 전담조직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된 경우
2.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또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 7. (생략)
- ② - ③ (생략)

평가대상 조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전담조직이 제2항제6호에 따른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하고, 해당 전담조직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 취소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기관의 인증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법인·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인증 자체평가 보고서
2.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4. 위기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
5.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 공개성, 예측 가능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 제정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사례관리의 신청 및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자기돌봄비의 지급,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 관련 결과 공표 등 규정 부재

 - 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 안 제5조에는 결과 공표 등 규정이 없어 행정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저하 우려됨

- » 수탁기관·사무의 내용에 대한 공개 규정 부재로 행정업무 투명성 저하

 - 제정안 취지와 같이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안 제14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업무 투명성 미흡, 책임성 확보 장치 미흡 우려됨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및 재지정(재위탁) 된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 미흡

 -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의 취소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된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함에도, 안 제16조에는 이를 당연 취소사유가 아닌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임의 취소사유로 규정
 - 따라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행정청이 지정취소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지정취소를 면하기 위한 부정청탁 등 부패 발생가능성이 존재

- »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취소에 대한 공개 규정 미흡

 - 안 제16조에는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취소 시 해당 위탁기관을 공개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 가능성 저해 및 행정결정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저하 우려

- » 전문기관 인증 지정에 대한 공개 규정 미흡

 - 안 제24조에는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공개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 가능성 저해 및 행정결정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저하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규정 마련
- » 수탁기관·사무의 내용에 대한 고시 등을 통해 공개 규정 마련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및 재지정(재위탁)된 경우, 당연 취소사유로 규정
- »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취소에 대한 공개 규정 마련
-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공개규정 마련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제정]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② (생략)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지정·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전담조직 지정·위탁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위탁 취소 통지서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전문기관 인증) ① - ③ (생략)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 ⑥ (생략)

사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및 시험방법)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83조의12(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재기사
5. 그 밖에 재난관리 전문인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람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연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격 시험·연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평가기준

» 공개성, 예측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험방법, 자격심의회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 제 점**

-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관련 공고장소 부재
 -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안 제83조의9에서는 관련정보를 그 어디에 공고한다는 내용이 없어 수요자에 대한 행정의 예측성·공개성이 저해될 가능성

- ▶ 재난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성·객관성 부족
 - 재난관리 전문인력은 공인재난관리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안 제83조의12제1항제5호에서는 ‘그 밖에 재난관리 전문인력으로 장관이 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해당사항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 부재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관련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알 수 없고, 혼선을 주어 법령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 기관 관련 구체성 부족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연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안 제88조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만 규정하여, 해당사항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 부재
 -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법인 입장에서 알 수 없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탁 기관이 결정될 수 있어 예산낭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자격시험의 시행 관련 사항을 어디에 공고하는지 수요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고방식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 재난관리 전문인력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고시 등의 하위규정으로 위임
-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 기관 관련 사항을 당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고시 등의 하위규정으로 위임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5394호, 2025. 3. 19., 일부개정]

제83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 수수료
4. 선발 예정 인원
5.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략)

제83조의1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유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생략)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자격시험·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 ⑥ (생략)

사례 4

관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5조(가격신고)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 3. (생략)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평가기준

» 공개성,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관세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일괄하여 가격신고가 가능한 '일정기간'의 구체성·명확성 결여

- 일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저해가 우려

-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일괄 가격신고 요건 등을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괄 가격신고가 가능한 기간 등 필수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일괄하여 가격신고가 가능한 '일정기간'에 대해 당해 조문 또는 하위법령(부령, 고시 등) 등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6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15조(가격신고) ① - ② (생략)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3) 예측 가능성

| 개요

-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 평가방법

-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행정절차 관련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 예측 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사례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6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식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 ⑤ (생략)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평가대상 조문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 3)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4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 제2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 제2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⑥ (생략)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대상 조문

2. 개별기준

행정처분 사유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 23조의 4 제2항 제2호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
나.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제1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 23조의 4 제2항 제2호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 황**

» 개정안은 법 개정예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 제 점

▶ 전담기관 지정 관련 불명확한 세부 기준

- 법 제23조의4에서는 농식품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에 대해 정하고, 시행령에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 안 제1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준 중 제2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 및 제3호 ‘기술적 능력’은 모호한 기준으로, 해당 요건만으로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 해당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된다는 점, 전담기관의 지정이 강학상 위탁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담기관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 ④ (생략)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간 상이한 처분 기준

- 영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안 별표1의 개별기준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다목으로 정하였고, 안 별표2의 개별기준에서는 가목 및 나목으로 분리하여 정하고 있어,

- 처분권자의 사안별 처분기준이 해석에 따라 달리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처분의 상대방인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우려

»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미흡

- 법 제23조의5에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안 제16조의4 및 별표2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나,
- 안 별표2의 일반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일반기준이 미흡
- 대표적으로 ‘위반차수 산정을 위한 회차 적용 기준’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적 처분을 적용할 기준 자체가 부재하고,
- 그 밖에 위반행위가 2건 이상으로 행위시와 적발시가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후 앞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 처분의 적용차수 기준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정처분 발생 및 예측 가능성 저하 우려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6)》 제2편 제2장 실체 규정 p.211

- 과징금 부과처분이 영업정지(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살려 과징금 부과사유를 영업정지사유와 연계한다. (중 략)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과징금 부과사유를 정할 때에는 정지처분사유와 과징금 부과사유를 일치시키도록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전담기관 지정 세부 기준을 당해 법령 또는 고시 등의 하위규정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 전담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간 일치된 부과 기준 마련
- » 전담기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3.] [대통령령 제36049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16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 제2항제2호			
1)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 취소		
2)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에 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그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5 제1항	3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나.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5 제1항	3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사례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0조의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시행기간을 180일 범위에서 변경
2. 사업비의 변경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4.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5.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6.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제 점

- ▶ 개발계획 사전협의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요건 구체화 미흡
 - 법 제38조의2제1항에 의하면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후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 이에, 안 제30조의3에서는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사업 시행기간, 사업비, 면적 및 용도 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30조의3의 각 호 중 제2호의 ‘사업비의 변경’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경미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9.] [대통령령 제3578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30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사례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의4(재징계요구 요건)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 현 황

»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재징계를 요구할 때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 ⑬ (생략)

문 제 점

» 재징계요구의 시효 기간 부재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재징계를 요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에 대한 대강의 기준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재징계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재징계요구권자의 재징계요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잠재하고, 이를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처분의 예측 가능성 저해가 우려되고,
- 특히 재징계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즉, 재징계요구권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최소한의 재징계요구 시효 기간을 마련하여, 재량 여지를 줄이고 재징계요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검토결과: 개선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징계요구 가능한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88호, 2025. 7. 31., 일부개정]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①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사례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신청한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이하 “감사인 지정 유예”라 한다)

1. - 2. (생략)

3. 매년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회사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공시가 있는 경우. 다만, 신청기준일 이전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 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편 및 제4편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처를 받거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다만, 신청기준일 이전에 법원의 처분취소 또는 무죄 판결이 있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 6. (생략)

② - ⑧ (생략)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 황

» 개정안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제점

- ▶ 감사인 지정 유예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 증권선물위는 회사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감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감사인 지정 유예) 규정하고 있고,
 - 제3호나목에는 증권선물위로부터 조치를 받거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가 없어야 하나, 신청기준일 이전에 법원의 처분취소 또는 무죄판결이 있거나, '증권선물위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위 경미한 위반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 감사인 지정 유예의 사유로서 '증권선물위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인 경우를 하위법령에 위임 또는 고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15조(증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회계·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생략)

나.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또는 제4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제146조제2항·제151조제2항·제158조제2항·제164조제2항·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제429조의2·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5.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회계·감사에 관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

사례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결과 활용 등) ① - ② (생략)

③ 소방청장등은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 기록을 역학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서식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구급대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관서에보관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제21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검진 등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 1. 본 동의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등 수립·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및 제27조(건강관리대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검진 등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
- 2.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비밀 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3.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 정보 : 건강검진 결과, 문진 자료 및 예방접종 이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 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방관서(소방본부 및 소방서)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건강검진 정보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소방청 및 소방관서가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평가기준

- » 예측 가능성

현황

- » 개정안은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력의 수집·활용 근거 신설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감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제점

- » 안 제21조제3항에서는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 기록을 역학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별지 제13호서식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는 보관시점을 퇴직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음
- » 안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검진 등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에서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공무원 연금 종료 시까지로 정하여 본칙과 서식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 저해

검토결과: 개선권고

- » 개인정보 동의서 보관시점 명확화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7. 4. 8.] [행정안전부령 제619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① 생략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구조·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제5항의 조치에 따라 진료한 진료 기록부
2.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관련 자료
3.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조·구급대원의 병력(病歷)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개요

-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 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이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사례 1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의 경우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선출 방법·임기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제정안은 온라인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제점

» 부적격한 위원의 심의 배제를 위한 해촉 등 자격상실 규정 부재

- 특정위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비위행위 및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해촉 등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온라인학교도 공립 각종학교로서 시·도교육청에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도 본 규정(안) 및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됨에 따라, 위원의 해촉 및 자격상실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위임 체계를 온라인학교도 준용함을 명확히 하도록, 위임사항에 명시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 명확화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온라인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7호, 2025. 9. 16., 제정]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위원(온라인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선출 방법, 임기 및 자격 상실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사례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6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현 황

»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문 제 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제도 미흡
-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시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을 기피 의결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기피 의결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침해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기피 대상 위원이 해당 기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2호, 2025. 9. 23., 제정]

제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생략)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 요

-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평가방법

-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사례 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8조(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산업, 전력계통, 안보, 안전 및 금융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 이익공유 및 주민 수용성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평가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평가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⑧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 황**

▶ 제정안은 법 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 제 점

연임 제한 규정의 부재

- 안 제28조제4항에서는 입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에 대해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음
- 이는 특정 위원의 장기 또는 무제한 연임을 사실상 허용하게 되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검토결과: 개선권고

입찰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개선결과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6호, 2026. 3. 24., 제정]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상풍력발전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선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선정위원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3조(인권교육) ① - ③ (생략)

④ 법 제20조제3항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라.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1개 이상

⑤ 제4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 ⑪ (생략)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제점

▶ 인권교육 실시기관 구체화 미흡

- 안 제2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어, 유사 위원회가 안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권교육 실시기관으로 당연지정 시 전문성 부족, 이해충돌,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인권교육 실시기관 법적 근거 명확화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 [보건복지부령 제1155호, 2026. 1. 30., 일부개정]

제23조(인권교육)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 - ⑪ (생략)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개요

- ▶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법령 등에 내재하는 소극행정 유발 요인을 이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 법령상 근거 부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용규정」 제2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용규정」 제2조제3호)

평가방법

- ▶ 법령상 근거 부재로 인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의 상·하위 법령을 검토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음에도 하위 법령에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근거 부재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업무태만, 자신 또는 소속기관만을 위한 자의적인 업무처리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 소극행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
 - 처리기한 규정,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등 공무원의 업무태만 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반복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법령상의 근거 부재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불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상 각종 요건 등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결과 통지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통지합니다.

심의차수	피접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접종정보
심의결과					

※ 「보상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보상결정 근거는 붙임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직인)

평가기준

-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접근의 용이성, 예측 가능성

현황

- » 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활한 피해보상 업무의 수행을 위해 피해보상의 결정·통지 방법 및 절차와 이의신청의 방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문 제 점

- » 안 제4조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상여부 결정을 한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결과 통지서 1부를 신청인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으나,
- 별지 제5호서식은 심의결과란만 있고 해당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이 없어, 행정절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경우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접근의 용이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생략)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 ⑧ (생략)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 ⑥ (생략)

- ⑦ 행정청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⑧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별지서식 안내사항에 국민편의를 위해 안내사항 기재(「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반영)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보건복지부령 제1130호, 2025. 10. 23., 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의 차수					
피접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접종정보
심의 결과					
안내사항	<p>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직인

사례 2

도서관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6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 ⑦ (생략)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① (생략)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는 해당 디지털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공개성

현황

※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유사

» 개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등의 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도서관자료(도서 등) 발행 자는 납본 의무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부자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온라인 자료 제공자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관련 법령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 ② (생략)

-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 ④ (생략)

-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제 점

- » 도서관자료 등의 보상에 대한 사전 안내 규정 부재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납본자 등으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해당 절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사전 안내 규정의 부재로 보상과 관련한 소극행정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 「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당한 보상은 의무사항인바, 사전 안내를 통해 법률의 취지에 맞는 행정 집행 필요

검토결과: 개선권고

- »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보상 절차를 몰라 피해 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소극행정 유발 요인 차단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2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① - ② (생략)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5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5

III

참고자료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 관련 법령



0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 준수 <수요 측면>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nput type="checkbox"/>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input type="checkbox"/>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집행 <공급 측면>**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3 재정누수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 행정절차 <절차 측면>

1 접근의 용이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2 공개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 예측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느장 대응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의 행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0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¹⁾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측 가능성)	
신청서류 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인가? (예측 가능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2 부과·징수 업무²⁾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 :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 가능성)	
가중 · 감면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 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 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 가능성)	
체납 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3 보조·지원 업무³⁾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 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공개성)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을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⁴⁾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출자·출연·옹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4 위탁·대행 업무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input type="checkbox"/>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⁵⁾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⁶⁾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input type="checkbox"/>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 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 의무 등의 규정 확인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⁷⁾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단속·점검 업무⁸⁾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 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실시 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성의 용이성)	
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목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구성 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 (이해충돌 가능성)	
임기 및 신분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 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척·기피·회피	<input type="checkbox"/>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8 인사 업무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 시 (이해충돌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input type="checkbox"/>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공개성) 	
기관장 재량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 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검토항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절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0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른	시행령
<p>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p> <p>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p>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유발의 가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법 률	시행령
	<p>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p>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 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 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 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 보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 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 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 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 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법 률	시행령
	<p>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4호
 개정 2011.10.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45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3호
 개정 2013. 6.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8호
 개정 2015. 1.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2호
 개정 2015. 3.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5호
 개정 2015.11.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90호
 개정 2019.10. 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81호
 개정 2020. 5.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1호
 개정 2020. 9.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1호
 개정 2020.11. 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9호
 개정 2022. 4.2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4호
 개정 2023. 4.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제·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는다.
-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연 1회 이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한다.
 1. 개선권고를 통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개선권고 내용이 법제처 법령안 심사, 국회 법률안 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

3. 소관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입법을 통해 개선권고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부규정(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소관 기관이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등에 대한 기초자료·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행 법령등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3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 통보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를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부칙 생략

2025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5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전화 044-200-7654

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의 허락 없이 본 책자를 영리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